

의안번호	제 128 호
의 결 연 월 일	2019년 월 일 (제 회)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9년 2월 26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 안
번 호

제 128 호

제출연월일 : 2019년 2월 26일
제 출 자 : 충 청 북 도 지 사

1. 제안사유

- 도 지휘부와 119종합상황실 통합 청사 신축을 통해 분산된 자원의 통합관리 및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로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지휘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이번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은 2018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원안의결 되었으나 청주 밀레니엄타운 확장개발 계획에 따라 건립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려는 재심의 안건으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

재산의 취득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및 부지 취득 변경(안)》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1 (청주밀레니엄타운 내)
사업기간	· 2018 ~ 2020년	· 2018 ~ 2021년
규 모	· 부 지 : 3,500m ² · 건축연면적 : 2,580m ² (지하1층, 지상 3층)	
사 업 비	· 145억원 (부지 25.13억, 건축 67.87억, 정보통신구축 52억)	

3. 2019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4. 관계법령 : 별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14조
-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8조

공유재산관리계획

2019년도 관리계획총괄표(14-1)

○ 회계명 :

(단위 : 건, m^2 , 천원)

2019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14-2)

○ 회계명 :

(단위 : m²,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 득 시 기	취 득(변경) 사 유	취득재산 전소유자	비고
	지목	소 재 지	면 적					
계	토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1 일원 (밀레니엄타운 내)		3,500	2,513,000	2018-2021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위치 변경	충북 개발공사
	건물	"		2,580	6,787,000	"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
	기타	"	정보통신1식	5,200,000	"	소방본부 통합청사 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시스템
1	토지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1 일원 (밀레니엄타운 내)		3,500	2,513,000	2018-2021	소방본부 통합청사 건립위치 변경	충북 개발공사
	건물	"		2,580	6,787,000	"	소방본부 통합청사 신축	-
	기타	"	정보통신1식	5,200,000	"	소방본부 통합청사 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 시스템
2	토지							
	건물							
	기타							
3	토지							
	건물							
	기타							
4	토지							
	건물							
	기타							
5	토지							
	건물							
	기타							

관 계 법령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p>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p> <p>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p> <p>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른다.</p> <p>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ol style="list-style-type: none">취득의 경우 :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ol style="list-style-type: none">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p>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충청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p> <p>②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 매매계약서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 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 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p>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p>	